

# 最適豫算理論의 再考

李 弼 佑\*

## 1. 머리말

豫算은 한 나라의 社會, 文化, 經濟 및 政治生活의 社會總過程을 質的 및 量的으로 規制하는 한 해의 資金計劃이다. 즉豫算은 한 社會經濟의 一定한 秩序를 유지하고 高次元의 인 國家目標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不可缺하다. J. Bodin은 일찌기 “豫算은 國家의 神經”이라 고 지적한바 있다. 이는 모든 國家政策은豫算을 통해 비로서 실현되며 구체화된다는데 그 根據를 두고 말한 것이다.

이와같은豫算은 民間部門으로부터 公共部門으로의 資源移轉을前提로 한다. 여기에 열마만한 資源이豫算을 위해 公共部門으로 移轉되어야 하는가의 問題가 놓여있다. 즉豫算의 規模는 무엇에 의해 어떻게 決定되어야 하는가 하는 規範의 問題가 提起되지 않을수 없다. 이같은 問題는 所與資源의 効率的配分과 直結되고 있는 것으로서 財政學에서는 最近「公共財의 理論」(Theory of Public Goods)에서 活潑히 論議되어지고 있다. 이에 관한 最近 經濟學徒들의 많은 關心과 勞力은 相當水準의 理論的 공헌과 解決方法을 提示하고 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우리의 關心은 첫째 이같은 解決方法들이 과연 現實財政世界에 즉豫算의 總過程(編成, 議決, 執行)의 運用上의 觀點(operational viewpoint)에서 볼 때 妥當한 것인가에 대해 회의를 提起하지 않을수 없으며, 둘째 個人的選好가豫算規模 및 構造의 決定過程에 과연 어느정도까지反映되어질수 있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던지지 않을수 없다.

本論의 目的은 이와같은 問題意識을 바탕으로하여 이 分野의 主要學說 내지 接近方法을 음미하고 그를 檢討批判하여 再整理하자는 데 있다.

## 2.豫算規模의 決定原則

먼저 最適豫算規模에 관한 模型 내지 理論을 分析하기 前에豫算規模를 決定하는 大前提 내지는 原則(Grundsatz)에 대하여 보기로 하자.

豫算規模決定의 大前提是 資源面에서 公共部門과 民間部門의 均衡이라고 할 수 있다. 厚生經濟學의 財政理論에서 이같은 公共部門과 民間部門에 있어서의 調和내지는 均衡을 保證해 주는 傳統의 基準은 다음과 같다. 즉「財政支出의 限界效用이 民間部門에 있어서의 支出의 限界效用과 一致되는 곳에서 財政支出의 規模는 決定되어져야 한다.」換言하여 같은 生產要素(資金)를 公共部門에서 使用했을때나 民間部門에서 사용했을때나 그 支出의 最終單位로 부터 얻는 效用이 같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檃國大學校 商經大學 副教授

이 같은 原則에 입각하여 決定되는 豈算의 크기가 곧 最適經費水準을 갖춘 理想的인 豈算規模라고 하며 또한 民間部門과 公共部門의 資源配分에 있어서 均衡이 實現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로써 社會厚生은 極大化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厚生極大原則은 이미 19世紀 말엽 E. Sax에 의해 주장되어 그 後 E. Lindahl, A.C. Pigou, Bowen, P. Samuelson 및 R. Musgrave<sup>1)</sup>등에 의해 追從되고 있다.

이와 같은 厚生極大原則이 現實財政世界에 適用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여기에서는 잠시 뒀어두기로 하자. 우리의 관심은 厚生經濟學에 기초한 豈算規模決定의 原則을 實現할 수 있는 方法과 手段이다. 다음에서 우리는 이 問題의 解決에 있어 가장 代表的이고 精緻한理論을 提示하고 있는 Samuelson-Musgrave의 模型을 음미하고 批判하기로 한다.

### 3. Samuelson-Musgrave模型

위에서 言及한 豈算規模의 決定原則을 充足시킬 수 있는 첫번째 方法은 個人主義的接近(Individualistic Approach)이다. 이는 厚生經濟學에 立脚한 規範的接近이라고 할 수 있다. 이 分野에 있어서의 最適豫算理論은 周知하는 바와 같이 「公共財의 理論」(Theory of Public Goods)으로서 알려져 있으며 이의 가장 뛰어난 先驅者的 貢獻은 1950年代에 P. Samuelson에 의해 이루어졌다<sup>2)</sup>.

厚生經濟學의 財政理論을 確立시킨 R. Musgrave도 最適豫算規模를 그 方法論에 있어 P. Samuelson과 步調를 같이 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兩者의 模型을 함께 다루기로 한다.

「公共財」(public goods)의 概念은 「市場失敗」(market failure)에서 비롯되고 있는데 P. Samuelson은 이를 「結合供給」(joint supply)으로서 파악하고 있다<sup>3)</sup>.

즉, 公共財는 特定財貨 및 用役에 대한 反對給付(租稅)의 支拂과는 無關하게 모든 人們에 의해 消費되어 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는 反對給付를 支拂하지 않는限 特定財貨의 消費로부터 排除當한다는 市場經濟下에서의 소위 「排除性原理」(exclusion principle)가 國防, 行政, 治安등의 公共財의 경우에 있어서는 適用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R.A. Musgrave는 公共財만이 지니는 「非排除性」(nonexcludability)이라고 지적 하였다<sup>4)</sup>.

다시 말해서 公共財는 私的財처럼 各消費者에게 分割되어질 수 없는 「非分割性」(indivisibility)을 띠고 있다. R. Musgrave는 公共財의 또 하나의 特性으로서 「非競爭性」(nonrival)을 들고 있다. 즉 Y財貨消費에 A가 參與했을 때 餘他消費者들의 効用을 減少시키지 않는다는 것으로 交疊, T.V., 放送등의 경우를 들고 있다<sup>5)</sup>.

이와 같은 「公共財」의 概念規定下에서 P. Samuelson은 市場經濟에 있어서의 資源配分의 効

1) A.C. Pigou, A Study in Public Finance, Macmillan, 1947, pp. 30—34.

2) P.A. Samuelson, A Pure Theory of Public Expenditure, in: Review of Economics & Statistics, vol. 36, 1954. Diagrammatic Exposition of a Theory of Public Expenditure, in: Review of Economics & Statistics, vol. 37, 1955.

3) P.A. Samuelson, Contrast between Welfare Conditions for Joint Supply and for Public goods, in: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Feb. 1969.

4) R.A. Musgrave & P.B. Musgrave, Public Finance in Theory and Practice, 1973, p. 53.

5) R.A. Musgrave & P.B. Musgrave, Ibid. p. 53f.

率化 내지는 Pareto 最適概念에 입각한 最適資源配分原理를 公共財와 私的財의 配分에 採用하고 있다. 여기에서 前提되고 있는 것은 公共財도 私的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消費者의 個人的選好(individual preference)에 의해 決定되어져야 하며, 또한 個個人的選好의 表明이 이미 주어진 것으로 假定하고 있다.

이와같은 前提下에서 厚生經濟學의 最適豫算理論의 分析體系는 公共財와 私的財의 兩財貨間의 配分을 A와 B라는 two 個個人에 대해 어떤 方法으로 配分할 때 Pareto 最適이 實現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圖表 1의 세개의 diagram은 서로 密接한 牵連성을 띠고 있다. 從軸은 私的財( $X_1$ ), 橫軸은 公共財( $X_2$ )를 表示하며 中段의 圖表은 個個人 A의 私的財와 公共財에 대한 選好를 表明하는 無差別曲線을 나타내고 있으며, 下段의 圖表은 個個人 B의 兩者에 대한 無差別曲線을 表示하고 있다. 上段의 圖表은 한 社會가 私的財와 公共財를 供給할 수 있는 變換曲線(transformation curve)을 表現해 주고 있다<sup>6)</sup>.

경사도가 강한 B는 公共財에 대한 選好가 A에 比해 相對的으로 強함을 의미한다.

最適均衡點을 求하기 위해 우선 A는 그의 一定한 選好體系의 하나인  $a_2$ 의 無差別曲線上의 어느 點에서나 만족한다. A가  $a_2$ 를 선택했을 때 B가 선택할 수 있는 可能性은 CS이다. 이는  $a_2$ 를 上段圖表의 變換曲線에 옮겨본다면  $a_2$ 와 變換曲線FT가 流合하여 Q라는 面積을 만들며 이는 곧 A가  $a_2$ 에서 만족할 때 B에게 남겨지는 慾求充足可能性의 크기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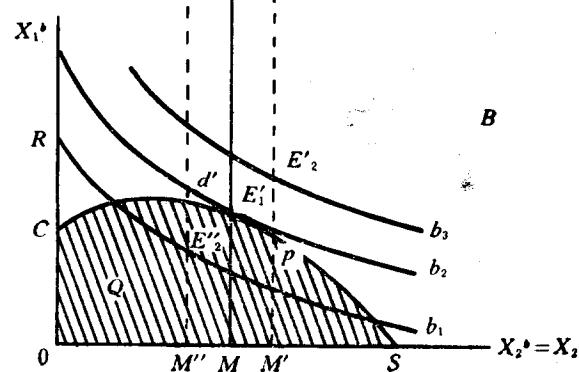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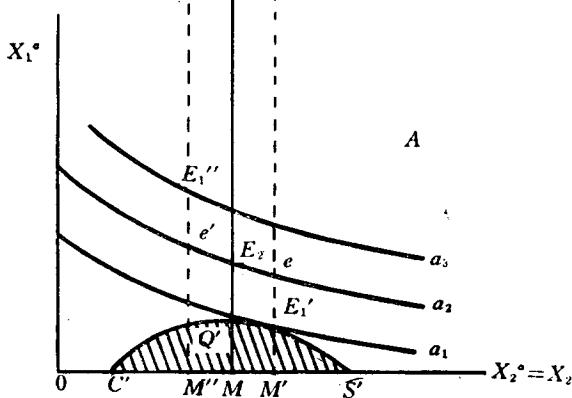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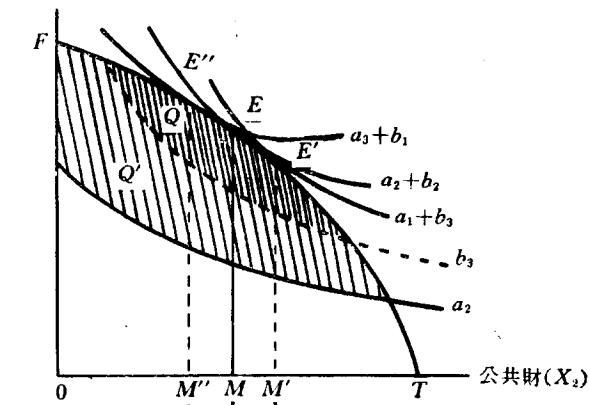
上段圖表의 Q를 下段B의 圖表에 옮기면 CSO라는 또 하나의 Q가 바로 B에 대한 呂구 충족 한계이다. 그런데 A가  $a_2$ 線上의 임의의 點  $e_2$ 를 선택했을 때 B는 d에서 決定되므로 CS線과 접점되지 않음으로써 만족의 国대화를 實現하지 못하는 非効率의 상태하에 놓여 있게 된다. B가 그의 効用을 極大化하는 뜻은 d가 아니라 CS線과 맞닿는  $E_1$ 이다. 따라서 B의  $E_1$ 에서 公共財의 供給은 OM으로 결정되며 이는 A의 경우  $e_2$ 가 아니라  $E_2$ 라는 것을 알수 있다. 變換曲線上의 接點 E는 私的財와 公共財의 効率의 配分을 實現한 바로 「Pareto 最適」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이點에서 B의 効用極大化는 A의 그것을 侵害하지 않고 이루어졌으며 AB는 同一하게 만족상태하에 놓여있으며 그以上の 厚生을 增進시키기 위해서는 相對方의 厚生을 減少시키지 않고서는 實現될수 없는 均衡下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注意할 것은 이같은 Pareto最適은 E에서만 可能한 것은 아니다. 均衡點 E는 우리가  $\Lambda$ 의 선호체계의 선택에 우선권을 부여했을 때의 경우 얻을 수 있는  $a_2$ 와  $b_2$ 와의 結合曲線에서 可能한 것이었다. 지금 만일 A대신 B에게 優先權을 주었을 때 어떤 結果에 도달하는가를 보자. 즉 B가  $b_3$ 라는 높은 水準의 無差別曲線上 어느 點에서도 同一하게 만족을 얻는다고 할 때 A에게 充足되어질 수 있는 범위는 Q'이며(上段圖表의 Q'와 中段圖表의 Q'는 그 크기가 같음) 그가 만족도를 극대화하는 뜻은  $E'_1$ 로서 C'S'線과 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OM'에 해당하는 公共財가 AB에게 同一하게 供給되며 私的財는 A가 M'E' B는 M'E'\_2만큼을 消費함으로써 社會의 總私的財는 M'E'와 M'E'\_2를 合한 M'E'이

6) A의 私的財需要를  $X^a_1$ , B의 그것을  $X^b_1$  그리고 A의 公共財需要를  $X^a_2$ , B의 그것을  $X^b_2$ 라고 한다면 A, B의 私的財의 總需要는  $x_1 = x^a_1 + x^b_1$ 이며, A, B의 公共財의 總需要는  $x^a_2 = x_2$  및  $x^b_2 = x_2$ 이다. 왜냐하면 公共財는 그의 供給價格인 租稅負擔率의 大小와 관계없이 A, B에게 同量이 供給되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私的財는 排除原則適用下에서 A, B가 모두 같은 價格을 支拂하나 그 供給量은 相異하다. E, Lindahl 또는 R. Musgrave의 部分均衡下의 公共財의 効率의 配分原理를 參照. R.A. Musgrave, Ibid. pp. 56-59.

&lt;圖表 1&gt; 公共財與私的財的最適配分

私的財( $X_1$ ) =  $X_1^*$  +  $X_1^b$



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서 第2의 Pareto最適  $E'$ 를 얻을 수 있다. 한 사람의 選好體系를 미리選擇한 制約條件下에서 B의 最大滿足點을 求함으로써 資源分配의 効率化를 期하기 위한 Pareto最適은  $E(a_2+b_2)$ ,  $E'(a_1+b_3)$  및  $E''(a_3+b_1)$ 등 無數히 있을 수 있다. 즉 無差別曲線의 移動에 따라 變換曲線上에 얼마든지 最適點은 있을 수 있다.

無數히 있을 수 있는 最適點中 어느 것이 가장 最適(optimum optimorum)인가를 究明하기 前에 A와 B 사이의 選擇에 있어서의 不公平의 問題가 있다는 것을 밝혀야 할것이다. A가  $a_2$ 의 無差別曲線上에 있다고 할때 B는  $b^2$ 에서 國代만족을 얻으므로 公共財 OM을 決定하였다. 그러나 만일 反對로 A에 선택의 우선권을 주지 않고 B의 선택으로부터 出發한다면 다른 結果를 얻을 수 있다. 즉 B가  $b_3$ 의 無差別曲線에서 그의 選好體系를 선호했다면 A가 効用을 國代화하는 點은  $a_1$ 線上의  $E'_1$ 로서 公共財는 OM'에서 決定된다. A로부터 出發했을 경우보다 公共財는 MM'만큼 더 많이 供給되며 이는 B가 A보다 公共財에 대한 選好度가 높다는에 基因한다. A가  $a_3$ 에서 滿足할때 B는  $E''_2$ 이며  $E''$ 의 閑形下에서 公共財는 OM''로 첫번째의 경우보다 M''M만큼 豫算規模는 감소되고 있다. 이는 A가 B보다 公共財의 慾求度가 얕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問題가 되는것은 누가 먼저自己선휴를 먼저 선택할수 있느냐는가에 있다. 즉 먼저 선택한 사람은自己의 選好體系에 의해 効用을 極大化할수 있으나 後에 선호하는 사람은 制限된 조건하에서自己選好體系를 선택함으로써 그만큼 희생을 強要當하고 있다.

이같은 경우 A에 대해 B는 자기선휴도의 양보 내지 희생을前提로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즉 이는 선택과정에서 A와 B는平等한 입장에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하며二者中 어느 한 사람이 相對方에 대해 「利他心」(altruism)을 베풀거나 아니면 相互間의 타협을前提로 했을때 비로서 Pareto最適은 成立할 수 있다. 그러나 實際에 있어서兩者가 타협, 또는 어느 한쪽으로부터의 利他心의 發揮가 언제 어디서나 可能하다는 保證은 있을수 없다는데서 하나의 E點이 實際의 最適豫算의 均衡點이라고 斷定할 수는 없다<sup>7)</sup>.

이같은 問題를 克服하기 위해 R.A. Musgrave는 A,B 사이에所得分配를 賦與하고 公共財供給을 위한 租稅負擔의 公平性을 圖謀할 수 있는兩者간의 公平한 입장에 力點을 둔 最適點을 摸索하고 있다. 이 문제를 다시 圖表 1에서 例示해 보자. 먼저 A의所得은 OD, B의 그것은 OR이라고 하자. A와 B의所得의 合計는 社會의 總所得 OF와一致한다. (OF = OD + OR) A가 OD를 ~~모두~~ 私的財에 支出한다면 A의 私的財는 OD일 것이다. 따라서 私的財와 公共財의 配合은 D에서 例로서  $a_1$ 線을 ~~따라~~ 이을 수 있는各點이라고 할 수 있다. B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만일 A가  $a_1$ 線上에서兩者的 配合點을 찾아  $E'_1$ 을 指했다면 B는 ~~T~~에 ~~여~~ 얕은 水準의 無差別曲線  $b_1$ 을 택할 必要가 없다. 그보다 높은  $b_3$ 線上의  $E''_2$ 에서 만족한다. 이때 A의 私的財는  $M'E'_1$ 이며 B는  $M'E''_2$ 이며 租稅負擔率은 B보다 A가 不利하며 즉租稅負擔後의 可處分所得의 크기의 比率은 A보다 B가 크다. 따라서  $E'$ 의 最適點은 B에게有利하고 A에게不利하다.

이같은 方法으로 우리는 均衡點  $E''$ 는 A에게有利하고 B에게不利한 點이라는 것을 쉽게理解할 수 있다. A에게도 B에게도 서로不利하게 하지 않는 點은  $E'$ 와  $E''$ 사이에 있을

7) K. Mackscheidt, Das optimale Budget, in K.-H. Hansmeyer(Hrsg.) Das rationale Budget, Kölnner Universitäts-Verlag, 1971, p.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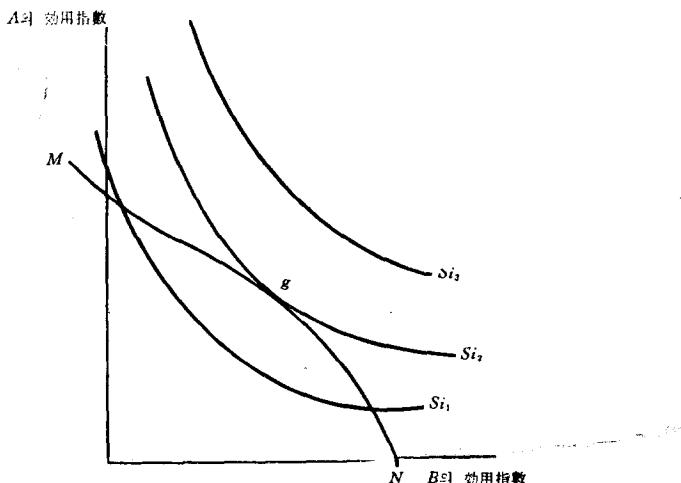
적이며 그것은 바로  $E'$ 와  $E''$  사이의 正中間點  $E$ 에 있다는 것은 自明하다. 따라서  $E$ 點이 「最適中의 最適」(optimum optimorum)이다. 이 같은 R. Musgrave의 所得分配을 부여한 상황下에서 最適點의 分析은 P. Samuelson보다 進一步한 模型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sup>8)</sup>.

여기에서 덧붙일 것은 各個人의 選好體系가 유사하면 유사할수록 균형점  $G'$ 와  $G''$  사이의 간격이 좁아질 것이며 따라서 最適豫算規模의決定範圍는 그만큼 좁아질 것이며 하나의 極端的인例로서 모든個人들의 선호체계가 꼭 같다면 결정범위를 허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G$ 는 當初에 決定될 것이다.

또한 위에서 보는 바와같이 所得水準이 높을수록 自己의 선호체계를 所得水準이 낮은 相對方에 比較相對的으로 쉽게 實現할 수 있다. 例로서 B는 A보다 所得水準이 높으며 따라서 A는 自己의 公共財에 대한 강한 선호를 쉽게 實現할 수 있다.

다음에서 P. Samuelson은 「最適中의 最適」을 어떻게 接近하고 있는가를 보기로 하자. 우선 圖表 2에서 보는 바와같이 縱軸과 橫軸에 各己 A 및 B의 無差別効用水準을 表示하여 이로써 MN의 効用邊境(utilty frontier)을 얻을 수 있다. Pareto最適點은 바로 이 効用邊境線上에 無數히 있을 수 있다.

<圖表 2> 最適中의 最適



이제 모든 社會構成員들의 選好體系의 總和를 의미하는 社會厚生函數(social welfare function) 또는 社會의 無差別曲線(social indifference curve)과 効用邊境線上에 接하는 點  $g$ 에서 바로 「Pareto最適中의 最適」을 얻을수 있다고 한다<sup>9)</sup>.

P. Samuelson은  $g$ 點에서 私的財의 一單位가 지니는 社會限界厚生의 意味는 모든個人에 대하여同一하다고 함으로써 資源의 効率的配分問題와 所得分配問題까지도 함께 해결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社會厚生函數를 어떻게 求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社會의選好體系라면 그것은 각

8) R. A. Musgrave, The Theory of Public Finance, New York, 1959, pp. 83—85.

9) P. Samuelson, Diagrammatic Exposition of a Theory of Public Expenditure., Ibid, p. 195.

個人의 선호가同一한 유사성을 띠어야 한다는 개인적 선호의一致를前提로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現實世界에서 이같은 선호체계에 있어서의個人的一致가 과연可能한 것인가하는 의문을 던지지 않을수 없다. P. Samuelson은 이點에 있어서 社會厚生函數에 대해「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中立的으로表現되는 어떤 任意的으로決定되는 厚生函數」라고하며, 왜냐하면 P. Samuelson은 社會厚生函數를導出하는作業은經濟學者の課題가 아닌倫理的政治的問題로 돌려버리고 있기 때문이다<sup>10)</sup>.

P. Samuelson의純公共財(pure public goods)의概念은現實的으로不適合한側面이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그의公共財는 모든 사람들에게完全한外部性(externality)을 지님으로써 그消費로부터의排除가不可能하며또한私的財는外部性이 전혀缺如됨으로써 배재原則이 적용된다고 한다. 이같이극단적이고엄격한公共財概念은결국憲法, 國防一般行政 service등과 같은集合財(collective goods)에는適用될지모르지만그러나그외에教育, 國立病院, 公園, 失業手當등과 같은集合財의 경우에는消費로부터의排除가 반드시不可能하지는않다.例로서國立公園은그곳을訪問하는사람에게만消費가制限되고있으며國立病院, 失業手當, 教育, 水利施設, 非常時警報를위한싸이렌등은地域의차이, 個人的事情 및情報에 따라充足되어지는公共財이다<sup>11)</sup>. R.Bish는 이를「選擇的需要」(option demand)라고지적하고 있다<sup>12)</sup>.

이와같이 볼때 P. Samuelson의純公共財의概念은豫算의一部分만을包括한다는制約性이 있다. 이點에 있어서는 오히려 R. Musgrave의社會財(social goods)와價値財(merit good)의區分이보다妥當하다고하지않을수없다<sup>13)</sup>.

또한社會의厚生函數가비록現實적으로導出될수있는問題라고是認한다하더라도그것은相互利害를달리하는여러集團들에 의해決定되는政治性과倫理的規範性을띤다는것을看過해서는안될것이다. 이렇게볼때政治的決定의結果인社會의厚生函數에 의해얻은最適點은따라서特定集團이本來追求했던最適點과배치되는현상을초래한다는것을회피할수없을것이다<sup>14)</sup>.

이에더하여社會의厚生函數는個人間의效用을相互比較可能하다는것을전제하고있는데이것이극히非現實의假定이라는것은이미周知의事實이다.

우리는지금까지厚生經濟理論에立脚한最適豫算理論을P. Samuelson과R.A. Musgrave의一般均衡下의模型乃至解決을中心으로考察해보았다. 이解決이지니고있는理論의側面에서뿐아니라實際運用上의觀點에서볼때의諸制約性을다음에서整理綜合해보기로하자.

첫째,豫算의最適規模를말해주는Pareto最適의均衡點은變換曲線의移動에따라또無差別曲線의移動에따라無數히있을수있다( $G, G', G''$ ).

둘째,여러개의最適點中어느것이가장最適인가를決定하는基準은效用邊境線과社會的無差別曲線의接點이다. 社會的無差別曲線은無數히많은個人의선호체계가모두같다는것을前提로해야하며과연現實적으로이같은理想的類型의概念이存在할수있느냐는

10) P. Samuelson, Ibid, p. 194.

11) J. Margolis, A Comment on the Pure Theory of Public Expenditure, in: Review of Economics & Statistics, vol. 37, 1954, pp. 347ff.

12) R. Bish, The Public Economy of Metropolitan Areas, Chicago, 1971, p. 27.

13) R.A. Musgrave, The Theory of Public Finance, Ibid, P. 13.

14) K. Mackscheidt, Ibid, p. 41.

문제는 아직 立證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政治的, 倫理的의 規範性과 合理의의 순수경제이론에 기초한 規範性이 現實世界에서 一致하지 않는다는 것은 自明하다. J. Margolis는豫算規模과 構造는 社會的價值體系 또는 集團의 利害團體의 力學關係에 의해 決定権을 指摘하고 있다.

셋째,豫算規模決定에 있어서 두사람의 決定者가 있을때 누가 먼저 선호결정의 優先權이 부여되어 지느냐에 따라 有利하다. 즉 決定의 우선권을 가진者が自己 선호를 쉽게 實現할 수 있다. 이 點은 個人的的 決定原理에 배치되고 있다. 즉 Pareto最適은 이경우 최소한 두사람중 어느 한사람의 側好乃至「利他心」을前提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아니면 兩者間의 철충 또는 타협이 있을때 비로서 그 Pareto最適은 存立할 수 있다.

넷째,各個人의 公共財에 대한 선호체계의 차이가 적으면 적을수록 Pareto最適點은 용이하게 決定될 수 있다.

다섯째,所得이 多者가 적은者보다 公共財에 대한 決定權이 더 많이 부여되어지며 따라서 자기선호에 입각한 公共財의 規模를 쉽게 實現할 수 있다.

여섯째,市場機構의 理論(個人主義의接近)에 입각한 Pareto最適이 可能하다 하더라도 그 것은 社會全體 또는 國家의 觀點에서 볼때 必要한 公共財의 規模와 반드시 一致한다고 하는 保證은 없다. 例로써, 國防 또는 國際關係에 있어서의 公共財規模는 그 나라의 國際的位置 및 地理的條件 등에 의해 決定되어져야 하며 個人的의 선호표명의 總計的概念인 社會的厚生函數(自發的交換說)에 기초한 公共財의 規模가 社會的으로 國家의으로 要求되는 規模와는 항상 差異가 있을 것이다<sup>15)</sup>.

일곱째,無差別曲線과 所得分配는 模型에서 이미 주어진 것으로 가정하고 있으나 實제豫算決定은 R. Musgrave도 是認하고 있는 바와 같이 投擲의 過程을 通해 이루워지는 政治的決定의 性格을 뼈므로 순수경제적인 合理性에 基礎한 模型만으론 解決될 수 없다. 問題는 수많은 決定者들이豫算規模 및 構造에 대한 決定에 어떻게 그들 선호를 표명하고 意志를 形成하여, 어떤 過程을 통해 合議乃至 同議(consensus)에 도달하는가를 分析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運用面의 觀點에서豫算規模의 선택에 관한 政治的決定은 단지 効用邊境上에서 社會厚生函數曲線이 接하는 Pareto最適을 不幸히도 許容하지 않는다. 따라서 다음에서 우리는豫算規模決定에 관한 支配的의 政治經濟學의接近을 살펴보기로 한다.

#### 4. 投票決定理論

위에서 본바와같이 集合的慾望은 市場經濟原理에 입각한 自發的原理에 의해서는 決코 滿足스럽게 解決될 수 없다. 이경우 우리는豫算規模의 決定問題를 政治的決定에 一任시키는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고찰한 限界効用學派의接近乃至厚生經濟學의最適豫算理論을 포기하고 政治經濟學의側面으로 分析의 視角을 돌리지 않으면 안된다.

經濟學의合理的基準을 가지고 適正豫算을 운용한다는 것은 不可能하며 단지 할 수 있는 것은 政治的決定過程이豫算規模과構造決定에 있어서 個人的 선호가 어떤 方法과 過程을 통해 表明되며 또한 消費主體가 表明하고 願하는 慾求가 과연 어느 程度로豫算에反映될 수 있느냐 하는 問題이다.

서전의 經濟學者 K. Wicksell은集合財貨(Kollektivgüter)의 量的決定은 어떤 方法에 의

15) F.K. Mann, Finanzpolitische Entscheidungen in einer pluralistischen Gesellschaft aus ökonomischer Sicht, in: H.C. Recktenwald(Hrsg.), Finanzpolitik, Köln Berlin. 1969.

해 合議되어지는 가를 投票決定理論에 의해 提示하고 있다.

먼저 假定으로서 個人은 누구나 集合財에 대한 선택의 자유가 獨立的으로 保障되어 있다 고 하자<sup>16)</sup>.

租稅는 法的強制性에 의해 누구나 義務的으로 내야 하지만 租稅를 納付하기 前에 즉 租稅率이 議會에서 아직 議決되지 않은 前段階에 있어서 納稅者로서의 國民은 特定한 租稅를 新設할 것인가, 租稅率을 引上할 것인가 또는 租稅負擔의 配分은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一連의 財政問題를 民主社會의 政治的參與라고 할 수 있는 投票(voting)를 통해 決定할수 있다. 즉 特定租稅의 新設, 稅率의 引上 및 追加的租稅負擔등의 政府案을 拒否 또는 承認할 權利가 各個人에게 부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은 問題에 K. Wicksell은 독특한 idea와 原理를 適用하고 있다. 즉 個人은 特定한 財政問題의 決定에 있어서 自發的인 意思를 表明하며 또한 어떤 財政問題의 決定이 自己의 個人的效用에 어떻게 영향할 것인가를 잘 알고 있다. 여기에 있어 K.Wicksell은 M. Olson이 지적한 free-rider 問題를 적용한다. 즉 租稅負擔은 個人的效用의 상실을 意味하며 따라서 租稅를 自發的으로 負擔하려는 사람은 없다<sup>17)</sup>.

이 같은 現象은 非排除性原理가 적용되는 즉 租稅를 負擔했건 안했건 또는 租稅負擔을 쳐 게했던 많이했던 간에 모든 사람들에 의해 消費되어 질수있는 公共財가 지니는 特性에 基因한다고 할 수 있다. 이경우 他人으로 하여금 租稅負擔을 더 많이 하도록 할때自身은 보다 큰 效用을 實現할 수 있고 結果的으로 公共財에 대한 선호표명을 하지 않음으로써 公共財供給을 위한 租稅負擔을 회피하려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런 사람을 M. Olson은 free-rider (無償受惠者)라고 지적하였다. 이같은 free-rider의 問題는 決定者の 數가 많을수록 즉 큰 集團속의 個人은 自身의 租稅負擔에 대한 個人的寄與度를 過少評價하는 경향이 놓후하여 free-rider의 極端的인 경우는 자기가 실제 願하는 公共財가 全혀 供給되지 않거나 또는 不足하게 공급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 K. Wicksell은 만장일치의 可決을 理想的인 決定方法으로 提示하고 있다. 滿場一致의 可決은 어떤 過程을 통해 이루어지는가를 보자. 위의 無償受惠者的 問題를 감안한다면 아무도 그의 真正한 選好乃至 새로운 財政慾求를 表明하지 않으려 할것이다. 그러나 議會에서 누군가가(政府) 公共投資 또는 租稅負擔에 관한 새로운 財政計劃案을 提示할 것이며 이는 議會表決에 의해 可決 또는 否決될 것이다. 만일 否決되면 다른 計劃案이 이에 代替되어 提示될 것이며 이는 모든 사람들에 의해 承認되어져 合議될때까지 選擇的인 租稅配分方法을 담은 計劃案이 提示되어 결국 滿場一致에 도달한다는 것이다<sup>18)</sup>.

이와같은 K. Wicksell의 表決過程에서 注意할 것은 經費와 租稅가 同時に 考慮되어지고 있는 點이다. 즉 個人은 租稅를 納付함으로써 상실되는 效用의 크기가 새로운 財政慾求充足(經費)으로 부터 얻은 利益보다 클때 그는 勿論 새로운 財政計劃案을 拒否할 것이며 아니면 自己에게 適合한 稅率로 調整하여 承認 또는 可決할 것이다. 따라서 滿場一致에 의해 決定된 豫算의 執行으로 말미암아 自己의 厚生狀態가 前보다 悪化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바로 이點에 있어서 K. Wicksell의 滿場一致決定의 原理를 Pareto의 最適과 다름이

16) 이는 P. Samuelson이나 R. Musgrave의 厚生經濟學의in 財政理論에 있어서의 假定條件과同一하다.

17) J. Burkhead & J. Miner, Public Expenditure, Macmillan, 1971, p. 117.

18) K. Wicksell, A New Principle of Just Taxation, in: R.A. Musgrave & A. Peacock(ed.), Classics in the Theory of Public Finance, London, 1967, pp. 87—97.

없다고 할 것이다<sup>19)</sup>.

그러나 만일 단 한 사람이라도 財政計劃案을 反對한다면 滿場一致에 의한 合議는 不可能하다. 한편 어떤 計劃案에 한 사람도 그를 贊成하는 사람이 없을 때 이상태야 말로 Pareto 最適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왜냐하면 Pareto最適이란 어느 한 사람의 厚生을 감소시키지 않고서는 (여기에서는 不贊成하는 사람의 경우) 나머지 社會構成員의 厚生이 增進될 수 있는 均衡狀態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사람도 贊成이 없는 狀態는 결국 現狀維持的(status quo)인 最適을 의미하며 社會全體의 厚生增進은 不可能하다는 것을 의미함에 不過하다.

K. Wicksell의 滿場一致의 決定理論은 결국 最適豫算理論에 있어서 別 意味가 없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現實의으로 기의 不可能하기 때문이다. 즉 단 한 사람이라도 veto하면 否決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合議決定이 缺如될 때 이는 「現狀維持의 最適」(status quo optimum)을追求하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K. Wicksell은 滿場一致의 困難性을 克服하기 위해 「過半數表決制」(qualified majority)를 滿場一致에 가까운(approximate unanimity) 概念으로써 提示하고 있다. 그러나 「過半數表決制」의 경우 역시 現實의으로 Pareto 最適의 의미에서 最適豫算의 概念과一致할 수 있으며 또한 滿場一致에 의한 最適豫算의 概念을 代替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K. Arrow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個人主義의 選好乃至 合理性이 集合의理性(collective rationality)乃至 緊密적 선호와一致될 수 없다는 「一般的 不可能性의 原理」(General Impossibility Theorem)에 의해 K. Wicksell의 「過半數表決制」는 個人的 선호가 완전히 公共財決定에 있어서 表明되었다고 할 수 없다<sup>20)</sup>.

例로서 個人 X는 B보다 A를 C보다 B를 선호한다면 그는 論理的으로 C보다 A를 선호한다. Y는 C보다 B를 A보다 C를 선호하고 Z는 A보다 C를 B보다 A를 선호한다고 하자. 만일 여기에서 이를 세 사람의 個人的 선호들을 集計.aggregate한다면 결국 多數決(majority)에 의해 B보다 A가 C보다 B가 선호될 것이며 그러나 C보다 A는 선호되지 않음으로써 個人 X는 多數決에 의해 그의 선호가 희생되고 있다. 따라서 投票에 의한 集合의合理性은 個人的 선호를 無視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R. Musgrave는 그러나 위임投票의 結果가 個人的 선호가 表明되도록 유도되어져야 하는데 투표자 또는 개인의 수가 많을수록 少數者의 선호표명은 희생되며 不利益은 감수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社會財의 特性으로부터 오는 피치못할 事情이기 때문이라고 한다<sup>21)</sup>. 이外에도 K. Wicksell의 「過半數表決制」의 解결은 最適豫算이라기 보다는 「公共財決定方法에 있어서의 最適」이라고 할 수 있다<sup>22)</sup>.

## 5. 「執權爲主型」理論

앞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最適豫算의 經濟學의合理的基準의 提示가 現實의로 運用的實用面에서 不可能하다면 남은 問題는 公共財決定에 있어서 個人的 선호가 얼마나큼反映되느냐 하는 點이다. 이 問題에 대해서는 이미 A. Downs에 의해 言及된 바있다. 그의 接近方

19) J. Buchanan, The Demand and Supply of Public Goods, Chicago, 1968, p. 155.

20) K. Arrow, Social Choice and Individual Values, New York, 1963, pp. 48-60

21) R.A. Musgrave, Public Finance in Theory and Practice, Ibid, P. 91.

22) K. Mackscheidt, Ibid. p. 49.

法은 政治學의 研究方法에 革新的인 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經濟分析의 中心概念인 効用의 極大化原理를 政治行動에 適用하고 있기 때문이다<sup>23)</sup>.

A. Downs의 大前提是 市場經濟에서 企業가 消費者的 선호에 입각해서 生產行動을 하는 것과 同一하게 政治家도 그를 신출해 주는 投票者의 利害關係乃至는 大衆의 公共財의 慾求構造를 充足시켜 주는 基準에 입각해 行動한다는 것이다. 이경우 정치가는 自己의 支持票를 極大化시키는 觀點에서 또 投票者는 自己의 욕구와 이익을 극대화 시켜 주는 觀點에서 각己合理的으로 行動할 것이다. 즉 정치가는 투표자의 이해와 직결된 정강과 政見을 내놓을 것이고 投票者는 그의 利益과 慾求를 가장 正確하게 充足시켜 줄 수 있는 政見을 내놓은 政治家에게 支持表를 던질 것이다며 結果的으로 投票者의 社會經濟의 慾求(선호)를 가장 정확하게 적중한 정강을 지닌 政治家가 政權을 잡을 것이다<sup>24)</sup>.

이같은 執權爲主類型의 理論은 이미 J. Schumpeter에 의해 주장된 바 있다<sup>25)</sup>.

그러나 「執權爲主型」의 理論은 다음과 같은 點에서 그 缺陷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즉 첫째, 公共財의 規模와 構造는 一部強力한 利害集團의 慾求 및 선호에 의해決定될 可能성이 많으며 반드시 個個人의 선호를反映시킨다는 保證은 없는 것이다. 例로서 모든 사람들의 利害와 직결되는 公害問題는 一部集團인 企業家の 投資促進을 위한 減免稅 문제만큼 重要하게 다루어지지 않는 경향이 現實이다. 따라서 個個人의 原子的 선호표명을 保障할 수 있는 條件인 「完全競爭」은 市場經濟에서도 不可能한 것과 마찬가지로 公共部門에선 더욱 不可能하기 때문이다<sup>26)</sup>.

둘째, 爲政者는 마치 企業가 그의 販賣政策을 통해 소비자의 욕구와 선호를 규제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投票者의 公共財에 대한 선호를 戰略的으로 규제, 조정할 수도 있으며 또한 그의 次期執權을 위해 전략적으로 投票者의 公共慾求를 完全히 充足시키지 않을 것이다<sup>27)</sup>.

셋째, 多數人 및 큰 集團속에서의 個個人은 他人과의 賛同的協助에 別 매력이나 興味가 없는 것이 通例이다. 즉 自己個人의 의사는 全體決定에 別 큰 영향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 다시 free-rider問題가 있으므로 個個人의 선호표명이 不可能하다.

## 6. 公共財決定費用理論

集合的決定에 있어서 K. Wicksell의 決定理論에서도 본마와같이 租稅負擔으로 因한 個個人의 効用上실과 經濟支出로 부터 환원되는 利益이 最少限一致할 때 個個人은 特定財政計劃案에 賛成할 것이다. 특히 J. Buchanan은 K. Wicksell의 滿場一致의 合議決定을 보기까지에는 너무도 많은 決定費用이 所要된다는 不合理한 方法을 지적하고 그들은 公共財의 集合的선택(collective choice)에 있어서 所要되는 社會的相互作用費用(social interaction costs)을極少化하는 觀點에서 決定되어야 한다고 主張한다.

J. Buchanan의 公共財의 社會的決定費用에 관한 理論은 Pareto의 最適을 分析目標로 하지 않으며 보다는 公共財의 決定을 위한 政治的制度的側面을 考察한다. 특히 財政의 政治

23) J. Burkhead는 이를 經濟學者の 政治學에의 領域侵犯이라고 하고 있다. Ibid. p. 164.

24) A. Downs, Eine ökonomische Theorie des politischen Handelns in einer Demokratie, in: H.C. Recktenwald (Hrsg.), Finanzpolitik, Ibid. pp. 49-63.

25) J. Schumpeter, Kapitalismus, Sozialismus und Demokratie, Bern, 1950, pp. 427-433.

26) K. Mackscheidt, Ibid. p. 46.

27) A. Downs, Why the Government Budget Is Too Small in a Democracy, in: E. Phelps (ed.) Private Wants and Public Needs, New York, 1965. p. 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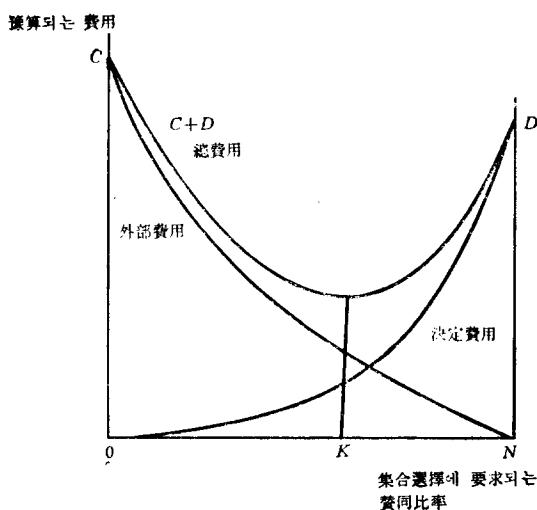
的過程은 J. Buchanan에 의하면個人의 利益을 증진시켜야 한다는立場에서決定되어야 한다. 그의大前提是財政의選擇은 어떤集團에 의해決定되는 것이 아니고利己心(self-interest)에 의해行動하는個人에 의해決定된다는 것을強調한다. 따라서J. Buchanan의財政學의概念은「財政의選擇에 관한經濟學」 또는「政治學에 관한經濟學」이라고規定한다.<sup>28)</sup> 이와같은 J. Buchanan의個人의効用極大化를重視하는集合的選擇理論은一名「利己的接近」(self-interest approach)이라고불리우고 있다.<sup>29)</sup>

한個人은市場에서든 또는集合的決定의 경우이든 그는 그自身의利益을극대화시키는原理에 의해行動한다. 私的財의 선택에 있어서와同一하게公共財의 선택에 있어서도 따라서個人의合理性이適用되어져야 하며社會的合理性(social rationality)이 적용될수는 없다고한다. 하나의集合財의決定을위해서는 2人以上의相互同意가必要하며이에는費用이所要된다. 이같은費用은「決定費用」(decision costs)으로서집합적결정을위한公共機構, 및組織의設立을위한費用,情報提供을위한費用 및合議를위한「계약적 전략」(strategic bargaining) 또는「政治的結託」(logrolling)을위한費用등으로構成된다. 決定費用은集合的決定에參與하는集團이크면클수록많이所要될 것이다.

집합적선택에所要되는費用은決定費用以外에政治的인外部不經濟에서오는費用이든다. 즉個人의 의사와관계없이 정치적조직이 특정한經濟活動(예:租稅負擔의 증가)에參與토록强要하는경우에外部費用(external costs)이發生한다.例로서文教부의教育施設擴張案이의회에서決定되었을때 그로因해地方稅負擔은追加의으로 증가될 것이며만일本來이같은교육시설확장에찬동하지않는사람에게는追加의稅負擔은追加의外部費用이며희생이라고할수있다.<sup>30)</sup> 100名中단한사람의贊同이있을때남아지99名은원치

&lt;圖表 3&gt;

決定費用 및 外部費用



28) J. Burkhead, Ibid. P. 164.

29) J. Burkhead, Ibid. pp. 163—167.

30) R. Bish, Ibid. p. 37

않는 公共財供給을 위한 稅負擔을 하여야 함으로 이 경우 外部費用은 가장 크며 反對로 100名이 모두 賛同했을때 外部費用은 零이다. 따라서 集合決定에 必要한 賛同比率에 따라 外部費用은 클수도 있으며 적을 수도 있다. 즉 50%의 賛同比率이 要求되는 경우보다 90%의 경우가 外部費用이 相對的으로 적게 所要된다.

外部費用과 決定費用은 同一하게 集合的決定에 必要로하는 個人的 數의 函數라고 할 수 있으며 즉 前者는 集合的決定에 參여하는 個人的 數의 減少函數이며 後者는 增加函數이다.

다음 「圖表 3」은豫想된 外部費用과 決定費用을 나타내 주고 있으며 집합적선택에 所要되는 總費用은 外部費用과 決定費用을 합한 비용으로써 U型曲線을 나타내 주고 있다. C+D의 U型曲線의 最低點에서豫算規模가 決定될 때 最適이라고 한다<sup>31)</sup>.

이와같은 J. Buchanan의 接近은 會議決定에 所要되는 費用을 極少化시킬 수 있는合理的인 方法이긴 하지만 實際運用上의 觀點에서 그러나 다음과 같은 制約性이 있다.

첫째, 決定費用이나 外部費用은 個人主義의 合理性에 입각한 費用函數임으로 社會의合理性에 입각한 評價와 基準이 缺如됨으로써 J. Buchanan의 費用函數는 社會의으로 要求되는 公共財의 最適量(例로서 國防, 外交등)과 一致된다는 保證은 없다.

둘째, 費用測定과 評價는 各個人마다 相異할 것이며 따라서 決定費用과 外部費用의 測定이 困難할 것이다. 즉 總費用函數에 의한 賛同比率을 얻기란 現實的으로 困難하다.

## 7. 公益的 接近

위에서 본 A. Downs의 「執權爲主型 接近」이나 J. Buchanan의 「決定費用理論」은 모두 個人의 利己心에 기초한 私的利益의 極大化에 그 分析의 초점을 두고 있다.

「公益的 接近」(Public Interest Approach)에 의하면 個人의 私利的動機나 個人的選好에 입각하여 公共財選擇이 決定된다는 A. Downs, J. Buchanan 및 K. Wicksell類의 「私益的接近」(Self-Interest Approach)을 否定하고 있다. 公共財의 選擇은 어느 個人的利益을 追求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全社會構成員의 利益 즉 公共의 利益(public-interest)을追求하는 動機와 觀點에서 決定된다고 力說한다. 이같은 接近은 個人主義의 厚生經濟學的接近에 대해 對立의인 接近方法인 有機體的接近(Organic-Approach)이라고 할 수 있다. 그 出發點은 個人的集合體로서의 社會와 國家는 그 構造와 目標에 있어서 단순히 個人的次元에서만 接近할 수 있는 超個人的次元의 特性을 지니고 있다는 有機體的思考方式에 있다.

公益的 接近은 주로 C. Lindblom 및 G. Colm에 의해 주장되고 있다<sup>32)</sup>. 이들에 의하면豫算規模 및豫算構造는 個人的選好에 입각해서 決定되는 것이라기 보다는 全體社會의 利益의 觀點에서 決定된다고 하며 이같은豫算의 決定은 議會, 行政府, 利害集團等의 參與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한다. G. Schmölders도豫算은 議會, 行政府, 利害集團 및 與論(市民의 國家意識 및 租稅意識)등의 諸要因에 의해 영향決定된다고 主張하면서 이들 要因들을豫算規模 및 構造의 決定에 있어서의 「決定的動因」(triebende Kräfte)이라고 指摘하고 있다<sup>33)</sup>.

31) J. Buchanan and G. Tullock, *The Calculus of Consent: The Logical Foundations of Constitutional Democracy*, Ann Arbor, 1962, p. 71.

32) C. Lindblom, *The Policy Making Process*, Prentice Hall, 1968, G. Colm. Analyse nationaler Ziele, in: H.C. Recktenwald, Finanztheorie, Köln, 1970, pp. 75—83.

33) G. Schmölders, *Finanzpolitik*, Berlin, 1975, pp. 86—139.

有機體的理論을 지지하는 이들은集合財決定에 있어서의社會的合理性(social rationality)이實現될 수 있다고信奉한다. 먼저 그들은종래의 소위「統合的方法」(Synoptic Method)이라고 할 수 있는古典的인決定方法의不適合性을批判하고 있다. 즉全分野에 걸친目標設定과手段提示에 의한全般的인政策計劃은論理的으로充分한合理性을 지니나實際執行面에서 볼때目標間의冲突이不可避하여나아가合議決定을困難하게하고 있다고지적한다. 이같은合理的인政策計劃이現實的으로不可能하므로C. Lindblom은厚生,極大化原理를포기한다. 그대신運用面에서執行可能하고實現될可能性이있는豫算規模와豫算構造를찾는것이妥當하다고한다. 이와같은運用面에重點을둔政策의戰略은따라서「漸增的」(incremental)이라는데있다.

例로서새해의豫算規模는지난해의그것보다단지「限界的變化」(marginal-change)에지나지않으며大幅의變化를수반하지않는다. 이같은過去의行動變數에대해小量의이고斷片의變化만이있을수있다는政策을그들은「漸增主義」(incrementalism)라고表現하고있다. 그러나漸增主義에기초한政策은分散의이며地方分權的으로立案된다는것이특징이다. 즉古典的決定方法에있어서와같이모든分野의政策이一時에綜合的으로立案되지않고政府各部處의水準에서또議會의立法家들의相異한次元에서決定된다. 이같은政策決定의分散的特性을그들은「非結合的」(disjointed)이라고하고따라서現實的인政策決定은「非結合的漸增主義」(disjointed incrementalism)에의해특징지워진다. 특히政策決定의非結合性내지分散性(fragmentation)은數多한利害集團에의해構成되고있는現代複合社會(pluralistic society)를고려할때不可避하다는것이다<sup>34)</sup>.

非結合的漸增主義에입각한政策의決定은따라서中央集權화되지않으며地方分權화되있는것이그特徵이지만政府(議會,行政府)의決定者들은合法의in支導力(leadership)이부여되있으며이지도력을改良의이고建設의으로合理의in決定을할수있는能力을지니고있다한다. 즉改善의支導力を지닌爲政者는多數의利害集團과個人들의合議를極大化(maximization of agreement)하는데努力하며合議의極大化는強制性에의해서가아니고說得과理解,妥協,양보에의해이루어진다고한다. 여기에서注意할것은이와같은決定過程이단순히個人의選好에기초하여이루어지지않고보다는合法의in改良의支導力에의한集合的合理性내지는社會的國家의in次元에서의當焉性에의해決定된다는것이다. 이같은非個人的次元에서의合理性이바로公共利益(public interest)과直結되고있으며이는다시豫算에國家目標로서反映되고있다.例로서生活水準의向上,教育,國防,環境保存,水利施設,資源開發등이바로이에 해당한다.

이같은論理에의하면公共財는個人의選好에입각해決定된다기보다社會的國家의規範의次元에있는合理性에의해決定된다는것이이들의命題이다. 이와같은「公益의接近」은個人主義의in厚生의極大化原理에입각한接近의規範的方法인데反해그method論에있어實證의이고서술적이라고할수있다.

## 8. 맷는 말

우리는지금까지最適豫算規模를決定하는模型 및理論들을살펴보았다.  
곧으로이들의解決이지니는長短點을要約해보자.

34) F.K. Mann, Ibid. pp. 40-44.

첫째. 個人主義的 合理性에 기초한 厚生經濟學의인 Samuelson-Musgrave의 模型은 公共財에 대한 個人的 選好表明의 困難性으로 말미암아 그의 運用의 意味를 가질 수 없다. 個人的的選好表明이 市場理論에서는 可能할지 모르나 公共財選擇에 있어서는 free-rider問題가 있으므로 不可能하다. 또한 個人的的選好表明만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P. Samuelson의 「最適中的最適」이 반드시 社會的 國家的規範의 次元에서 決定되어야 할 公共財供給量과 一致한다는 保證은 없다. 이는 政治的過程에 의해 決定된다.

둘째, 따라서 K. Wicksell은 投票에 의한 最適豫算理論은 提示한다. 그의 滿場一致의 會議는 Pareto最適과 一致할지 모르나 單一人의 拒否權行事로 實際的으로 不可能하며 그의 代案으로 「過半數 表決」의 解決도 그 會議過程의 性質上 너무도 큰 會議의 費用이 所要됨으로 非合理的이다.

세째, A. Downs의 「執權為主型」接近은 個人的的選好에 集中된 叙述의이고 實證의이며 理想의in 접근을 示圖하지만 爲政者의 次期執權을 위해 公共財의 完全한 效率性을 實現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또한 個人的的選好를 戰略的으로 變化시킬 위험성마저 있으며 이에 너ه free-rider 問題를 역시 모면할 수 없을 것이다.

네째. J. Buchanan과 G. Tullock은 會議過程에 所要되는 費用을 極少化시키는 方法을 매우 分析的인 模型에 의해 提示하고 있다. 決定費用 및 外部費用의 費用의 數는 가장 效率의이고 經濟的인 決定方法을 擇하는데 큰 도움이 될수 있을지 모르지만 費用評價가 個人主義的 厚生極大化의 原理에 입각하고 있는 이들의 費用函數의 最低點이 P. Samuelson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社會的 國家的 次元에서 要求되는 公共財必要量을 말해 준다고는 볼수 없다.

다섯째, C. Lindblom의 「公益的接近」은 위의 厚生經濟學의인 接近, 내지「個人主義의인 선택이론의 非現實性과不合理性을 지적하고 最適豫算規模를 決定하는 理論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나, 實際 運用面에서 받아 드려질 수 있는 理論은 없으므로 分析의이고, 合理論의인 規範的模型을 포기한다. 그들은 따라서 特定한 狀況下에서 決定되어질 수 있는豫算規模의 決定方法은 「非結合的 漸增主義」에 입각하여 이는 「改良的指導力」에 의해 社會의合理性를 實現할 수 있다고 한다. 이것이 最適豫算理論의 最終的인 解決이다. 그러나 이는 이미 厚生經濟學의인 最適의 意味는 상실됨으로써 最適豫算理論이라기 보다는豫算決定의 經驗的理論화라고 하는 것이 더 妥當하다.

끝으로 指摘되어야 할 重要한 問題는 厚生經濟學의 接近 및 個人主義의인 決定費用理論들은 經濟學의in 分析體系가 주어져 있는데 그들은 抽象의이고 특히 그의 運用의側面에서의 非現實性을 露呈하고 있다. 反面 有機體的方法인 公益的接近은 매우 서술적이고 運用의 意味가 크지만 한편으로 經濟學의 分析體系가 너무도 缺如되고 있는데 그 缺陷이 있다. 그러므로 今後의 最適豫算理論의 課題는 兩者的 制約性을 克服할 수 있는 順序적 方법에 의한 研究에 있다고 할 수 있다.

〈Summary〉

## A Reconsideration of the Optimal Budget Theory

**Pil-Woo Rhee**

Associate Prof. of Economics  
Dankook University

Some economists have tried to determine the conditions for the optimal size of budget. The solutions given by Samuelson-Musgrave models integrate the case for public goods into the theory of welfare economics.

Though their models are neat and logical in the analytical and definitional contents, it fails to give an operational meaning, due to the difficulty in the individual preference revelation (free-rider problem) as far as public sector is concerned, and also unrealistic definition of social welfare function. Even assuming the individual preferences revelation possible within the public sector, there may be a danger of discrepancy between the volume of public goods based purely on individualistic preferences and the socially required volume of public goods which should be based on the political, ethical and international view point or social value system of a nation.

The alternative approaches to the optimal budget theory followed by K. Wichsell, A. Down, and J. Buchanan and G. Tullock, are also not satisfactory from the operational view point in reality owing to the oversimplifications of the real world of fiscal politics in their analytical systems.

We come to the final solution, which is called public interest approach or organic approach proposed by G. Colm and C. Lindblom. They seek not any more the optimal budget theory in terms of welfare economics or Pareto-optimality but try to explain the pragmatic budget process, which they call "disjointed incrementalism". The latter is successful from the operational view point, however, deficient and unsatisfactory in analytical framework. It follows, therefore, that the next task for the students of public finance would be to find out an approach to the budget theory which could overcome the constraints involved in individualistic welfare maximization approaches and at the same time analytical deficiencies in organic approach.